

인천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2나549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2나5497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단2240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손광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동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보조참가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민윤기, 김현서, 윤성진

변론 종결2024. 8. 13.

판결 선고2024. 10. 15.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단22400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66,505,8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6,505,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9.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96,779,893원²⁾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6,779,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9.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0. 접수 제222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이에 C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C가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는 2022. 10. 13. 원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C에게 대여금 66,505,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9. 18.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본소 청구와 C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 청구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1나65982(본소), 65999(반소)], 위 판결은 2022.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22. 11. 1. C를 상대로 하여 식당에서 2017. 5. 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최저임금기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6498), 위 법원은 2023.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2024. 7. 25.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는 인정되나 C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나63065),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1행의 "다."를 "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32호증"을 "32, 46, 48호증"으로, "을 제8호증"을 "을 제8, 63, 78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 66,505,89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나,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를 상대로 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그 청구와 항소가 모두 기각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C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16행의 "추정된다."를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당시 피고의 모친인 D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E 지상 답 2,169m²의 1/10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 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토지는 사해행위 당시 C의 책임재산이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적극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증거들만으로는"을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보인다."를 "보인다(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당시 C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반하는 점, 거래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증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원고의 채권금액인 74,000,000원의"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채권금액인 66,505,894원의"로, 제11행의 "74,000,000원"을 "66,505,894원"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전부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는 일부취소만 가능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 내지 16행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변경,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범준

판사진희원

판사이형우

별지

1) 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하면서, 2023.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기존에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구하였던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기존에 제1심에서 예비적으로 구하였던 매매계약 일부취소와 그 취소 부분에 대응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취지를 확장하였다.

2) 대여금 채권액 66,505,894원 + 임금, 퇴직금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액 30,273,999원